

의안번호	2206735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5. 3. 27.
추계번호	24A608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의 정의에서 분산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함.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¹⁾ 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는 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정의하는 현행법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고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 시행령²⁾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 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개정안에 의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분산에너지 적용 대상이 확대됨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관계 부처의 자료 미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분산에너지의 적용 범위의 확대의 영향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조·용자(안 제47조),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4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51조) 등의 정부 지원 규모도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자료 미비,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미정으로 합리적으로 재정 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른 분산에너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nabo.go.kr